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22일

## CUOMO 주지사, 뉴욕시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START-UP NY 프로그램 개시

***Morgan Stanley의 전 CEO 겸 이사회 회장인 John J. Mack은 뉴욕시와 ESD 이사회의 특별 고문으로 임명***

Andrew M. Cuomo는 오늘 새로운 사업체가 뉴욕 전역에 모여들고 성장하도록 면세 구역을 만들 START-UP NY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주지사는 Morgan Stanley의 수석 고문이자 전 CEO 겸 이사회 회장인 John J. Mack씨와 300여 개의 국제 및 국내 사업체, 하이테크 업체, 학계 및 지역사회 리더들과 뉴욕시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전세계 수 많은 비즈니스 리더 및 CEO들이 뉴욕주의 최근 역사상 가장 야심찬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START-UP NY의 공식 출범식을 보러 모였습니다. “면세 혜택 때문에 뉴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나,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려는 기업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SUNY 시스템과 권위 있는 사립 대학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들과 제휴함으로써 첨단 연구, 개발 자원, 하이테크와 기타 산업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며 10년 동안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기업들은 START-UP NY 출범에 맞추어 모여들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ART-UP NY는 뉴욕주 전역,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기업가 정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캠퍼스 시스템은 타 대학 지역 사회들과 함께 전세계의 첨단 기술 및 기타 신흥 기업, 벤처 캐피탈, 신규 사업체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START-UP NY 프로그램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 캠퍼스나 공간에서 기업들은 10년 동안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립니다. 기업들은 SUNY 시스템의 고등 교육기관 및 기타 대학들과 제휴하여 업계 전문가, 첨단 연구 실험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www.startup-ny.com](http://www.startup-ny.com)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하고 적격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뉴욕주, 특히 북부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려는 전환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은 SUNY의 학업적 장점과 뉴욕주의 경제 엔진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자본화한 것입니다”라고 SUNY의 Nancy L. Zimpher 총장이 말했습니다. “START-UP NY 프로그램 때문에 학생과 연구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기술혁신 중심의 공공-민간 제휴가 예상되므로 뉴욕 전역의 SUNY 캠퍼스에서 풍기는 열기는 매우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뉴욕주의 새로운 경제 개발 고문 및 ESD 이사회의 특별 고문

주지사는 또한 John J. Mack가 뉴욕주의 경제 개발 고문 겸 Empire State Development(ESD) 이사회 특별 고문으로서 경제개발부(DED) 및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UDC)을 포함하는 직위를 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r. Mack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지사와 ESD에게 START-UP NY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그램 및 문제점에 대해 조언하고 뉴욕의 경제 성장을 도우며 뉴욕주가 기업들에게 더 활기찬 장소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John Mack은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경제개발 기회를 격려하고 추구하기 위한 변함 없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체에게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연고 및 개발 자원과 함께 최고의 면세 기회를 제공하는 START-UP NY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주지사는 성장하는 뉴욕주 경제를 위한 혁신적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Empire State Development가 새로운 뉴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돕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r. Mack은 현재 Morgan Stanley의 수석 고문입니다. 그는 2011년 Morgan Stanley 이사회의 회장으로 은퇴하여 2005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Morgan Stanley의 CEO로 활동했습니다.

Mr. Mack은 1972년에 채권부에 Morgan Stanley에 처음 입사하여 높은 책임을 가지는 직위로 점차 승진했습니다. 그는 1976년에 부사장이 되었으며 1977년에는 본부장, 1979년에는 상무 이사가 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Mr. Mack은 이 회사의 전세계 과세 고정 수입부를 이끌었습니다 1987년에 그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었으며, 1992년 3월에는 Morgan Stanley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1993년 6월에는 Morgan Stanley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Mr. Mack은 세계적인 2곳의 주요 재무 서비스 업체인 Morgan Stanley와 Dean Witter의 합병으로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1997년 5월부터 Morgan Stanley Dean Witter & Co. 사장, COO 겸 이사로 일했습니다.

2005년에 Morgan Stanley에 회장 겸 CEO로 합류하기 전에 Mr. Mack은 Credit Suisse Group의 공동 CEO 겸 Credit Suisse First Boston의 CEO 역할을 맡았습니다.

Mr. Mack은 Duke University를 졸업했습니다. Trustees of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과 콜롬비아 및 코넬 대학교의 대학병원의 신탁 이사회 회장, Tri Alpha Energy 이사회 회장, Bloomberg Family Foundation, Glencore International AG, Lending Club 및 Rosneft; 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했고 몇 개 비즈니스 위원회 및 비즈니스 원탁회의의 구성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Mr. Mack은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이사회의 고문, 베이징 시장의 국제 비즈니스 리더 고문 위원회, 뉴욕시의

파트너십 위원회 등에서 일했습니다. Mr. Mack은 KKR의 수석 고문이며 Corinthian Ophthalmic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세계 경제 포럼의 국제 비즈니스 위원회, NYC 재무 서비스 고문 위원회, Shanghai International Financial Advisory Council의 구성원입니다.

## START-UP NY 소개

**면세:** START-UP NY의 참여 업체는 10년 동안 세금이 면제됩니다(소득세, 사업세, 주 및 현지의 세금, 세금 없음). 참여 기업의 직원은 처음 5년 동안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두 번째 5년 동안은 직원 각 개인의 연봉이 최대 20만 달러인 경우, 가장 연봉이 25만 달러인 경우, 그리고 공동 사업 납세자 연봉이 30만 달러인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세 혜택에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 수는 연간 10,000건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적격성:** START-UP NY 면세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면세 지역을 후원하는 캠퍼스, 단과대학 또는 일반 대학의 학업적 미션과 조율하거나 이를 더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역 사회 및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이점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가하는 모든 기업들은 적절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창업,

· 타주에서 뉴욕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 뉴욕주에 위치한 기존 기업 중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예: 새 사업부를 증축하거나 고급 제조업 시설을 세울 경우, 기존 일자리 이동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임을 입증할 것)

또한 뉴욕주 인큐베이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은 면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Long Island와 Westchester 카운티의 사업체는 신흥 기업이거나 하이테크 업체이어야 합니다. 뉴욕주 전체에서 소매 및 도매 사업, 레스토랑 및 접대, 로펌이나 의료업무와 같은 전문직,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업체 등 특정 유형의 사업체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ESD(Empire State Development)가 자격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준비합니다.

각 대학 커뮤니티는 면세가 적용되는 위치를 선정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에 대한 계획을 개발합니다. 기업들은 참여 대학에 직접 신청하고, 사업이 승인되면 ESD는 60일 동안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기존 기업과의 경쟁 금지:** START-UP NY 프로그램에서 면세 지역 외 타 지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Korean

**대상 대학:** SUNY, CUNY 및 독립 대학들은 모두 면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습니다.

**SUNY:** 모든 SUNY 커뮤니티 칼리지와 4년제 단과대학/대학교는 다음을 사용하여 면세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UNY 캠퍼스 내 공터(뉴욕시 외부의 모든 캠퍼스)
- SUNY 캠퍼스 건물의 빈 공간(뉴욕시 외부의 모든 캠퍼스)
- 캠퍼스, 대학 또는 단과대학과의 우호적 제휴 관계를 맺은 모든 기업 인큐베이터 및
- 캠퍼스 1마일 이내에 위치한 최대 20만 평방피트(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북쪽 또는 서쪽의 모든 캠퍼스) 지역 또는 ESD가 추가 승인할 경우

**CUNY:** CUNY는 Manhattan, Bronx, Queens, Brooklyn, Staten Island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각 보로의 캠퍼스에 면세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CUNY Tax-Free NY 커뮤니티는 다음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UNY 캠퍼스 내 공터,
- CUNY 캠퍼스 건물의 빈 공간 및
- 캠퍼스, 대학 또는 단과대학과의 우호적 제휴 관계를 맺은 모든 기업 인큐베이터.

**사립 대학:**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START-UP NY 프로그램위원회에 의해 할당 할, Westchester 카운티 북쪽 지역의 사립 단과대학 및 대학 전용으로 마련된 300만 평방피트(약 60만 평방피트 추가 제공 가능)의 면세 지역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START-UP NY 프로그램 추진 위원회(주지사, 하원 의장과 상원 임시 의장이 임명하는 학문적 기업가 정신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3명으로 구성)가 뉴욕주 관할 농촌, 도시 및 교외의 지역적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당합니다.

Westchester 북쪽에 위치한 사립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의 경우 면세 지역은 공터와 캠퍼스 내외부의 공터뿐만 아니라 캠퍼스, 일반대학 및 단과대학들과 우호적 제휴를 맺은 모든 기업 인큐베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00만 평방피트 중 75,000평방피트는 각각 Nassau 카운티, Suffolk 카운티, Westchester 카운티, Brooklyn, Bronx, Manhattan, Queens, Staten Island 등에 할당됩니다. 뉴욕시와 Westchester, Suffolk, Nassau 카운티에 속한 사립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SUNY와 CUNY 캠퍼스는 모두 특별히 지정되지 않더라도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러한 면세 지역을 후원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000 평방피트의 지역이 군 및 자치구에 모두 할당이 끝나면 위원회는 각각 75,000평방피트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만 평방피트의 잠재 공간은 해당 군 및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개의 전략적 뉴욕 소유지:** 또한 3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최대 20개의 전략적 주 자산까지 면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폐쇄하고 비우는 과정에 있는 국영지, 국유 시설 또는 국가 소유의 시설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사업주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지역을 지역 경제 엔진으로 혁신하기 위해 SUNY, CUNY 또는 독립 대학들과 제휴할 것입니다.

**사기를 막는 강력한 보호 장치:** START-UP NY는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들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ESD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관련 기관 간에 일자리를 이동하거나 회사가 단순히 새로운 이름으로 재합병하여 기존 직원들이 새 일자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옷갈아입기” 등의 부정을 막는 엄격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START-UP NY는 내부 거래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사기가 발생할 경우 뉴욕주는 해당 업체들에게 제공한 혜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 등이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혜택이 줄어들거나 이러한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하거나 영원히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ESD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은 기업들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ESD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연례 보고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